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비교 연구

최호성¹, 김정대^{2*}

¹한국산학연합회 산학연사업팀 부장, ²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주무관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gulation-Free Special Zone and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Ho-Sung Choi¹, Jung-Dae Kim^{2*}

¹Department Leader, Division of Korea Association of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and Industry

²Assistant Director, Division of Regional Business Innovation Policy, Ministry of SMEs

요 약 최근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산업 간 융·복합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기술·신서비스 기반의 혁신기술을 육성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혁신사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실증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Sandbox)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전국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만을 완화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한계를 고찰하고, 규제자유특구가 신기술 기반의 실증 테스트 베드로 육성할 방향과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전략산업, 지역혁신성장사업, 규제혁신 3중세트, 국가균형발전

Abstract New technologies are being created and resulted as new types of fusion complex as the barrier between technology and industries are being broken and convergence is becoming more activated in the global economy of the era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government is trying to foster innovative technologies for new technologies and new services to prepare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gain global competitiveness, but many regulations make it difficult to verify and commercialize them. In response, the Korea government is pushing for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ion-free special zone system in which sandboxes are applied so that new technology and new service-based innovation projects can be freely commercialized through experiment and demonstration.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special zones for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applied to the zones that are applied uniformly throughout the country and suggest ways for the deregulation special zone to be fostered as an empirical test bed based on new technologies and as a base for regional innovation.

Key Words : Regulatory Free Zone, Regional Specialized Development Zone, Local Strategic Industry, Regional Innovation Growth Project, Regulatory Innovation 3-piece set,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Corresponding Author : Jung-Dae Kim (jdkim96@korea.kr)

Received January 8 2019

Accepted February 20, 2019

Revised February 13, 2019

Published February 28, 2019

1. 서론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서로 다른 기술간·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복합 활성화로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정보화 등의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1].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정부규제에서 벗어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맞춤형 특화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특정 법률에 열거된 규제특례만을 한정하여 완화하고 있어 유연성이 부족하고, 향토자원 중심의 지역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기술·신서비스를 접목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4차 산업혁명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혁신사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실험·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례로 영국은 핀-테크(Fin-tech)산업을 중심으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으며, 싱가포르의 환경서비스 산업의 혁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 일본판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검토 중에 있다[6].

우리나라에도 규제혁신을 통해 신기술·신서비스 기반의 혁신사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존 향토자원 중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구별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13].

본 연구는 '18년 10월에 공포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중심으로 기존의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새로이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8]

2. 지역특화발전특구

2.1 목적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일률적인 정부규제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규제를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유입 및 민관투자 협력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과 시장경제 원리를 통해 지역이 사업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등 지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유도한다[9].

2.2 추진경과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의 일환으로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제도 도입을 결정에 따라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이라 한다)의 제정으로 총 29개 법률 69개 규제특례가 적용되었다.[11] 2004년 12월 대구 약령시 한방특구, 순창 장류 산업특구 등 6개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지역특화특구제도의 시행 및 조기 정착의 단계로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2006년 10월 지역특구법 개정으로 47개 법률 97개의 규제 특례로 확대되었다. 이후 2008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재정경제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지역특구법 2차 개정으로 지역특구지정 안전 표준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내실강화를 도모하였고 선택할 수 있는 규제특례의 수도 58개 법률 126개 규제특례로 확대하였다.

2011년 3차 개정으로 규제특례의 수가 총 59개 법률, 132개의 규제특례로 확대되었다. 2013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역특구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기업청(現 중소벤처기업부)으로 이관되었다. 2018년 10월 4차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는 규제특례 4개를 제외함으로써 총 58개 법률, 128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2004년 특구제도 도입 이후 204개의 특구가 신규지정, 13개 특구가 해제됨에 따라, 2018년 12월 현재 전국 226개의 기초지자체 중 150개 기초지

자체에서 196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또한 182개 특구를 대상으로 2017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1만 655명의 신규 고용, 940여개의 신규 기업유치 및 7조 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

Table 1.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special district for regional development by year

Sortation		'04	'05	'06	'07	'08	'09	'10
Total		6	41	72	96	118	132	143
by year	Designation	6	35	31	25	22	14	11
	Release	-	-	-	1	-	-	-

Sortation		'11	'12	'13	'14	'15	'16	'17	'18
Total		150	151	155	163	172	184	194	196
by year	Designation	8	3	5	8	11	16	12	2
	Release	1	2	1	-	2	4	2	-

3. 규제자유특구

3.1 목적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서비스의 혁신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큰 틀 속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지정된다[2].

3.2 추진경과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 속에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2017년 10월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하였고 규제혁신 대토론회 등을 통해 신산업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혁신적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혁신을 위한 다각적 노력에 따른 주도면밀한 검토와 분석 등 제도보완 및 개선방안을 요구하였다[4].

2018년 9월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지역특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육성·발전시키

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매우 절실하며,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여 자유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18]. 이를 위해 신기술·신서비스 기반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 향토자원 중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구별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신설되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달리 기존 법령에서 제한한 201개의 규제특례와 더불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재정·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9년 4월 시행 예정이다[5].

4.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의 비교

4.1 개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와는 목적에서도 차이를 가진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 성장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인 반면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신서비스로 지역혁신성장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한다[12]. 특히 규제제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함으로써 정부가 육성하는 혁신성장 관련 분야로 유도할 수 있다[10].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만 적용받지만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더불어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 3중 세트’를 적용한다[7]. 특구의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지만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관계부처가 관계부처 간 업무조정 및 범부처 간 협업체계가 가능하다. 특히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세제 및 재정지원이 없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으로는 활성화가 어려웠던 부분이 존재하였으나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세제 및 재정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도록 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조기정착 및 신기술·신사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 또한 지역 기반 민간수요에 의한 지역혁신기업 등의 민간참여 유도하는 한편, 지역혁신성장사업육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의 미래 성장원천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혁신사업의 질적인 발전을 통해 신기술·신사업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16].

4.2 특구위원회 구성 체계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특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중앙부처 차관, 10명의 민간위원 등 25명으로, 실무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위원장)과 19명의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규제자유특구는 특구의 지정·변경·해제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를 둔다. 또한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해 복수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둔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국무총리(위원장)를 비롯한 14명의 중앙부처 장관, 15명의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원장)과 18명의 중앙부처 차관, 21명 이내의 민간위원 등 40명 이내로, 분과위원회는 3명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4.3 지정절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시·군·구 등의 기초지자체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고시 한다.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특구 및 부진특구를 선정하고 우수 특구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규제자유특구는 광역시·도 등의 광역지자체에서 규제

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의 사전검토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고시 한다.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운영성과를 점검한다.

4.4 지원내용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개별법에서 열거된 128개의 규제특례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재정·세제 지원은 없다[17].

규제자유특구는 개별법에서 열거된 201개의 규제특례와 더불어 규제혁신 3종 세트(①규제 신속 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가 적용되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재정·세제 등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4.5 지정효과 등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일정 지역에 128개의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기초지자체장은 지역의 특화전략에 특구의 특성을 살려 타 지역과 차별이 되도록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특구계획의 수립부터 집행, 성과창출까지 자율성이 보장된다. 기초지자체장이 규제에 인하여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 등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민간참여 유도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시행이후 150개 기초지자체에서 196개의 특구가 지정·운영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개별법에서 적용되는 201개의 규제특례와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인 규제혁신 3종 세트(①규제 신속 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규제혁신 3종 세트는 법령의 공백 또는 불명확할 경우에 규제에 대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규제자유특구에서의 규제 신속 확인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의 규제여부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받을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Table 2. Comparison of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with the Regulation-Free Zone

Sortation	(currently) th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New)Regulation-Free Zone
Object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Using Regional Specific Resources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Growth Based on New Technology and New Service
Application target	Basic magnetism (city, county, district)	Non-capital metropolitan government (city, provincial)
Subject to trial	the head of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offices	City and provincial governors + private companies, etc.
Related industry	Agricultural and service oriented (e.g. reporters, apples, etc.)	a new technology industry (Dron, Block Chain, Self-driving car, etc.)
Special application	Menu-type regulations special provisions (132)	Menu-type regulations specialities (201) + three types of regulatory innovation (regulatory verification, demonstration special cases, temporary permission)
deliberative committee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Committee (Chairman: Minister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Regulatory Freedom Special Committee (Chairman: Prime Minister) Regulatory Exception Review Committee (Chairman: Minister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Incentive	None	Tax and financial support
Designation procedure	local self-governing body → Mid- and medium-sized ministries → Implementation Committee → Specialized Development Zone Committee → Notice on Designation	Private enterprises → Wide Area → Consultation between medium and medium-sized businesses → Review → Regulation Free Special Zone → Notice on Designation

실증특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의 시험·검증을 일정 지역·기간 등을 한정하여 허용한다.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실증특례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면 규제 소관부처에서는 법령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시허가는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없거나, 법령의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임시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

품에 대하여 시장출시를 허용한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필요시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임시허가가 부여되면 유효기간 동안 규제 소관부처에서는 법령 정비 등을 의무화 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는 30일 이내,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 120일 이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여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는 법령의 공백 조건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시험·실증 또는 시장출시를 한 시적으로 허가하는 만큼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례부여를 제한한다. 또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에 대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배상할 책임이 부여된다.

5. 결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점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유사하다.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규제완화와 재정지원 분리운영, 민간역량의 활용부족, 규제특례의 실효성 부족 등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신기술·신서비스 기반의 지역 혁신사업과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3].

특구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특구 지정 시 지역혁신자원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육성하려는 분야와 연계하여야 한다[15]. 국가혁신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대학·연구기관 등 지역의 혁신자원을 활용하고 민간수요에 기반 하는 경우 특구를 우선 지정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타 지역대비 해당 지자체의 비교우위가 있는 경우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14].

민간과 지자체의 신사업 수요에 따라 특구지정을 신청하므로 시행초기에는 지역별 2~3개로 우선 지정·운영하고 신청 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대·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특구의 남발방지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강화를 위해 타 제도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특구의 참여기업수를 설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구는 한 곳에 집적된 형태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의 특성이나 산업별 특성에 따라 분산된 지역을 묶어서 특구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상호 이해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세제, 재정 등)를 혁신적인 규제특례와 더불어 각종 패키지 지원한다면 지역의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과 더불어 지역의 맞춤형 특화발전으로 지역 신규 일자리창출과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것이 다[17].

REFERENCES

- [1] J. H. Seo. (2018). The task of settling the regulated sandbox system. *Weekly Financial Brief*, 27(15), 3-11.
- [2] J. B. Kim. (2017). The Necessity and Measures for the Change of Regulation System to Post-regulation Based on Principles. *Weekly Financial Brief*, 26(15), 11-13.
- [3] H. W. Lee. (2017). Regulatory freezones, why the debate and how to understand it. *Protocol Research*, 52, 239-248.
- [4] S. S. Jung. (2017).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financial regulation : The concept and possibility of Korean law in the right bar 'regulatory sandbox'. *BFL*, 85, 6-15.
- [5] H. O. Choi. (2017). [Regulatory Sandbox] Policy Trends and Implication. *Trends and Issues*, (33), 1-20.
- [6] J. S. Choi. (2018). 4 Measures to rationalize regulations in the era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FUTURE HORIZON*, (35), 18-21.
- [7] Y. H. Choi. (2018). Policy Issues for Regulatory Innovation in ICT Sector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Regulatory Sandboxes. *Korea Institute of Policy Planning Seminar*, 2018(2), 3-10.
- [8] D. S. Kim & J. Y. Jeon. (2016). the legal implications and justification of the regulation free zone. *Information Law*, 20, 201-227.
- [9] J. C. Nam. (2016). Measures to Promote Regional Economy through Regulatory Free Zone National Territory Policy Brief. (591), 1-6.
- [10] K. J. Kim. (2018). administrative action law implications according to regulatory redesign. *Legal Issues*, 38(2), 169-218.
- [11] H. Y. Lee. (2009). Regional Special Zone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Homeland*, 6-16.
- [12] Y. W. Hwang & K. C. Kang. (2006).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Complement for the Revitalization of Regional Special Development Zone. *Tourism Leisure Research*, 18(4), 229-241.
- [13] J. H. Jung.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ion and innovation and misunderstanding: centering on the discuss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Policy Studies*, 2017, 45-64.
- [14] M. J. Kim. (2016). Name the issue: the industrial ecology that makes regulation relaxed. *Urban Affairs*, 51(566), 12-13.
- [15] B. D. Kim. (2016). Global adoption trends and implications of regulatory safety space. *Interstate Financial Brief*, 25(29), 10-11.
- [16] B. J. Kim. (2017). What will happen to the regulatory prezone in the new administration?. *Monthly public policy*, 142, 53-55.
- [17] S. T. Kim, S. H. Jeon & B. I. Lim. (2018). An Analysis on Macro-economic Effect of Tax Exemption in R&D Special Cluster.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8(6), 409-416.
- [18] D. S. Son, J. S. Lee & Y. B. Kim. (2017). The Effects of Government Support and Regulation on SMEs Technology Innov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117-125.

최 호 성(Choi, Ho Sung)

[정회원]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경영학 (경영학석사)
- 2017년 2월 : 공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공학박사)
- 2006년 5월 ~ 현재 : 한국산학연 협회 재직 중

· 관심분야 : 지역정책, 지역전략

· E-Mail : chs@auri.go.kr

김 정 대(Kim, Jung Dae)

[정회원]



- 2003년 2월 : 부산대학교 금속공학(공학석사)
- 2012년 2월 : 부산대학교 재료공학(공학박사)
- 2006년 11월 ~ 현재 : 중소기업부

· 관심분야 : 지역정책, 규제특례

· E-Mail : jdkim96@korea.kr